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허가 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허가 신청 내용	토지형질 변경	토지 현황	기울기		토질	
			토석 매장량			
		입목 식재 현황	주요 나무 종류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 면적		㎡	
		입목벌채		나무 종류	나무 수	그루
	건축물	면적	(대지/건축)	㎡	연면적	㎡
		건축물 종류/용도		구조/층수		
	공작물 설치	신청 면적	㎡		무게	
		공작물 구조		부피		
	토석 채취	신청 면적	㎡		부피	
	토지 분할	종전 면적	㎡		분할 면적	
	물건 야적	무게		부피		
		품명		평균 야적량		
		야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단
 [] 제13조제1항 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를 [] 허가 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수수료 없음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서 발급

허가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